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. 6. 16 선고 2023가단10258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열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수복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현 담당변호사 정승식

변 론 종 결 2023. 5. 19.

판 결 선 고 2023. 6. 16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4. 12. 2. 체결된 매매예약(이하 '이 사건 매매예약'이라 한다)과 2017. 12. 2. 체결된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각 취소한다.
2. 피고는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. 12. 3. 접수 제2822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(이하 '이 사건 가등기'라 한다)와 같은 법원 등기국

2020. 11. 23. 접수 제2069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이전등기’라 한다)의
말소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약정금 채권에 기하여 위 회사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25억
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. 위 추심명령은 2020. 2. 17.
C에게 송달되었다.

나. 원고는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C를 상대로 두 차례의 소송(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247,
같은 법원 2021가합566657)을 제기하였고, C는 원고에게 합계 2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
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다.

다. C는 2014. 12. 3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
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고, 2020. 11. 23.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
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 근거]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.

나. 관련 법리

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
제기하여야 한다(민법 제406조 제2항). 한편,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

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,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,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는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(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다26329 판결 등 참조). 그리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9다2515 판결,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다1518 판결 등 참조).

다. 판단

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매매예약이 2014. 12. 2. 체결되고,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7. 12. 2. 체결된 사실, 이 사건 이전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르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일 즉,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. 12. 2.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3. 1. 27.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.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.

3. 결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윤규

별지

부동산 목록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

 아파트 동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서초구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

1층 607.02㎡

2층 567.54㎡

3층 567.54㎡

4층 567.54㎡

5층 567.54㎡

6층 567.54㎡

7층 567.54㎡

8층 567.54㎡

9층 567.54㎡

10층 567.54㎡

11층 567.54㎡

12층 567.54㎡

13층 567.54㎡

14층 567.54㎡

15층 567.54㎡

지층 575.34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6층 호

철근콘크리트조

84.58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서울특별시 서초구

대 4066㎡

2. 동 소

대 2256㎡

3. 동 소

대 34㎡

4. 동 소

대 193㎡

5. 동 소

대 202㎡

6. 동 소

대 1684㎡

7. 동 소

대 506㎡

8. 동 소

대 220㎡

9. 동 소

대 1474㎡

10. 동 소

대 2681㎡

11. 동 소

대 6120㎡

12. 동 소

대 1066㎡

13. 동 소

대 1363㎡

14. 동	소
대 1914m'	
15. 동	소
대 2077m'	
16. 동	소
대 1983m'	
17. 동	소
대 1326m'	
18. 동	소
대 1065m'	
19. 동	소
대 480m'	
20. 동	소
대 4185m'	
21. 동	소
대 977m'	
22. 동	소
대 497m'	
23. 동	소
대 195m'	
24. 동	소
대 492m'	
25. 동	소
대 793m'	
26. 동	소
대 407m'	

대지권의종류 :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
23, 24, 25, 26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
23, 24, 25, 26. 38256분의 49.36

